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지정취소 처분 근거 마련〉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71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지정취소 처분 근거 마련	2
IV. 참고자료	6
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현황	6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지정취소 처분 근거 마련

개정안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참고자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지정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5항제4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검사기관으로 <u>지정받은</u>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4. ----- <u>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u> ----- -----

현행	개정안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 7. (생략) ⑥ (생략)	----- 5. ~ 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¹⁾에 따라 검사기관²⁾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1) 「환경보건법」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검사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25.6월말 기준으로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8개 비영리법인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됨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지정취소를 규정함에 따라 검사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지정취소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수도법」 제14조의4³⁾, 제15조의3⁴⁾ 및 제21조의5⁵⁾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물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 「수도법」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수도법」 제15조의3(물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물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 없는 경우

5) 「수도법」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에 한하여 지정 및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환경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여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대법원 판례⁶⁾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42

6) 대법원 2004.4.28.선고, 2002두11752 판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소정의 추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현황('25.6월말 기준)

연 번	구분	기관명	소재지	지정일
1	보 건 환 경 연 구 원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강원 춘천시	-
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 수원시2	-
3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 진주시	-
4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경북 영천시	-
5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광주 서구	-
6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구 수성구	-
7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전 유성구	-
8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부산 북구	-
9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 서초구	-
10		세종특별자치시보건환경연구원	세종 조치원읍	-
11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울산 남구	-
12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 중구	-
13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전남 무안군	-
14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15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충남 홍성군	-
1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충북 청주시	-
17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8	비 영 리 법 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2.11.14.
19		(재)FITI시험연구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2013.04.05.
20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2013.05.15.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은평구	2013.11.07.
22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02.16.
23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05.29.
24		(사)에스이엘안전기술원	경기도 화성시	2023.06.21.
25		(재)한국환경조사평가원	경기도 시흥시	2025.05.01